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○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『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』이 폐지(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,2011.12.16)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구체화(건의 및 자문 역할)
-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-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-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(안 제12조 호 신설)

○ 수당 등 지급
-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
(안 제15조 변경)

○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 명시
-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등
(안 제16조 제1항 변경, 제3항 삭제)

○ 보건진료소 업무 수탁 폐지(안 제17조 삭제)

※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나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(2012. 3. 27~2012. 4. 15)결과 : 의견 있음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여 부	비고
대구/경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(포항시남구 장기면 모포리)	○ 보건진료소 사업의 현실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고려 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으로 반대	반영() 미반영(√) ○ 보건진료소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(업무수탁 폐지) 보건의료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이 개정 취지이며,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자치입법으로 제출 의견은 미반영	

4. 관계법령 :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21조」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.

○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『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』이 폐지(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,2011.12.16)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

○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업무수탁을 통하여 운영되었으며 진료수입 등을 자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,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여 건의 및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며,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등으로 명시하므로 진료수입은 군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협의회는 진료소 운영의 후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그리고 업무수탁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진료소를 성주군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은 물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 운영하므로 진료소의 투명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조례개정 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